



CP 뉴스 브리핑 입니다



2014.07.04

[CP 사무국 뉴스 브리핑]

[제 326 회 (임시)국회 : 정무위원회 /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현황 (2014. 7. 2.)]

1.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

가. 유통·가맹·대리점·하도급 분야 거래상지위남용 근절

나. 대리점 분야 밀어내기 등 횡포 차단

2.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

가. 담합으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

나.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

*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

<http://www.kfcf.or.kr/network/read.jsp?board=32&page=1&serialnum=16158>

가. 유통·가맹·대리점·하도급 분야 거래상지위남용 근절

< 추진 실적 >

□ 대규모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임대차거래에 관한 표준적 거래 사항을 반영한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* 제정(6월)

*인테리어변경시 대규모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비용분담 기준 등 「대규모유통업법」 내용 반영

□ 대형마트 등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(5월~6월)

○ 판매장려금 심사지침 시행('13.10월) 이후 대규모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관행이 줄었는지 등 점검

□ 백화점,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(2분기)

* 부당감액, 부당반품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유통거래 관행 조사

< 향후 계획 >

□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 피해를 시정하기 위해 「특약매입거래 비용분담 부당성 심사지침」을 제정(3분기)

○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간 비용 분담 기준 제시

□ 대규모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및 추가비용* 부과 수준을 조사·공개(12월)

* (백화점) 인테리어비, 사은품·상품권 비용, 광고비 등, (TV 홈쇼핑) ARS 할인비용 등

○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

□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(연내).

나, 대리점 분야 밀어내기 등 횡포 차단

< 추진 실적 >

□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법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「계속적 재판매거래 불공정행위 고시」 제정(5.12. 시행)

○유통기한 임박상품.비인기 제품 밀어내기, 판촉비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확한 범위반 판단기준 제시

*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하는 보복조치도 금지 (공정거래법 개정'14.11.29 일 시행)

< 참고 > 보복조치 금지제도 내용

○ 보복조치 금지대상 : ①법 위반 신고, ②분쟁조정 신청, ③공정위 조사협조

○ 제재 조치 : 보복조치 중지명령, 과징금,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억원 이하의 벌금

○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최(5.28.)를 통해 고시 제정취지 및 내용을 홍보

*유제품, 식품, 쌀가공, 가구, 자동차, 통신, 화장품 분야 사업자단체 참석

□지난해 남양유업, 배상면주가에 대한 엄중제재에 이어 삼육식품*(’14.3 월), 서울도시가스**(14.3 월)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

*대리점의 거래지역,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구속조건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

** 고객센터에 대해 소비자가 체납한 가스요금을 대납하도록 하고, 직원선물용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, 과징금 부과

< 향후 계획 >

□ 화장품, 식품 업종 등을 대상으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검토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

□ 본사의 구입강제, 경제상이익 제공 강요 및 불이익 제공행위, 경영활동 간섭 등의 불공정행위 지속 감시

<위로 이동>

*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

<http://www.kfcf.or.kr/network/read.jsp?board=32&page=1&serialnum=16158>

가. 담합으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

□ 최근 국내외 경기 위축으로 담합 발생 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담합에 대한 법집행을

강화하여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필요

□ 상반기中 공공 입찰 담합 등 총 27 건의 담합사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

○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담합(대우건설 등 11 개사업자에 991 억원 과징금 부과, '14.4 월),

○ 대구도시철도 3 호선 터키대안공사 입찰담합(현대건설 등 12 개 건설사에 401 억원 과징금 부과, '14.3 월) 건 등

향후 민생 업종에서의 담합 적발을 강화하고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,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

○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사업자들간에 비밀 영업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하는 한편, 기업대상 카르텔 설명회도 개최

○ 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엄격히 하여 실질 부과수준을 높이고, 해당 법인은 물론, 가담한 임직원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

나.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

□ 모바일,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한 상품거래가 급증 * 함에 따라 기만광고, 사기성 거래 등으로 소비자 피해 빈발

* 전자상거래 총규모(단위:조원) : ('10)27.2 → ('11)32.5 → ('12)37.2 → ('13)41(예상)

* 모바일 전자상거래 규모(단위:조원) : ('10)0.3 → ('11)0.6 → ('12)1.7 → ('13)4(예상)

○사업자들이 파워 블로거 등을 매수하여 광고성 추천글,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 소비자선택을 교란하는 기만 광고 빈발

○모바일 거래시 화면크기 제약 등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필요한 주요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

□ 최근 음원 사이트 운영사업자*가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소비자 동의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 결제한 행위 시정(6.26.)

*(주)로엔엔터테인먼트(멜론), (주)소리바다(소리바다), (주)네오위즈인터넷(벅스), 씨제이이앤엠(주)엠넷

○ 모바일 거래시 상품정보·사업자정보의 표시 방법 등을 담은 「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」도 마련(6.13.)

*스마트 기기의 화면 제약을 고려한 표시 기준, 소비자의 총동구매시 모바일에서 바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마련 등도 포함

○아울러,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여 블로거들의 추천글이나 이용후기가 광고임이 명확히 표기될 수 있도록 조치(6.20.)

□현재, 주요 인터넷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거래급증 품목(모바일상품권, 영화·공연티켓등)에 대해 상품정보제공고시 * 이행실태 점검 中(5 월~7 월)

* 상품정보제공고시: 의류·식품등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30 여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

제공해야 할 상품 관련 정보(유통기한등), 거래조건 정보(교환·반품등)를 규정

향후,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쇼핑몰의 상품정보제공고시 위반행위 및 파워블로거 등을 통한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 조치 예정(하반기)

<위로 이동>
